

#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1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2월 2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라 “신·재생에너지”를 “신에너지”와 “재생에너지”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“신·재생에너지”를 “신에너지”와 “재생에너지”로 구분하여 정의함. (안 제2조 제14호~제15호)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신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
15. “재생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13. (생략)</p> <p>14. "신·재생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"신·재생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14. "신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</u></p> <p><u>15. "재생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</u></p>
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u>다음</u>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<u>12월 말까지</u>,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u>해당</u>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<u>1월 31일까지</u>,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신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
15. “재생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다음”을 “해당”으로, “12월 말까지”를 “1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13. (생략)</p> <p>14. "신·재생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·물·지열·강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"신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</p> <p>15. "재생에너지"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</p>
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b>다음</b>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<b>12월 말까지</b>,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17조(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b>해당</b>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<b>1월 31일까지</b>, 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